

참여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

■ 운영목적

- 본부 건설현장 내 실증기회 제공 확대로 우수 참여기술 개발 및 도입 촉진

■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지침」 (평가담당관, '24. 3.)
- 「테스트베드 서울 추진계획」 (시장방침 제117호, '19. 6. 3.)

■ 추진개요

- 대 상: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시범사업 검증이 필요한 설명회 참여기술

- ▶ [기술성숙도] 6단계 이상으로 시정 현장에 설치·활용 가능한 기술
- ▶ [실증기간] 최소 6개월 이상 (설치·준비기간 제외)
- ▶ [선정기술 유형] ① 본부 건설기술 설명회 참여기술 ※ 참여기술 검토회의를 거쳐 선정
② 「테스트베드 서울」 사업 공모 선정된 실증대상 기술
③ 창의 제안 등을 통해 시정 과제로 채택된 기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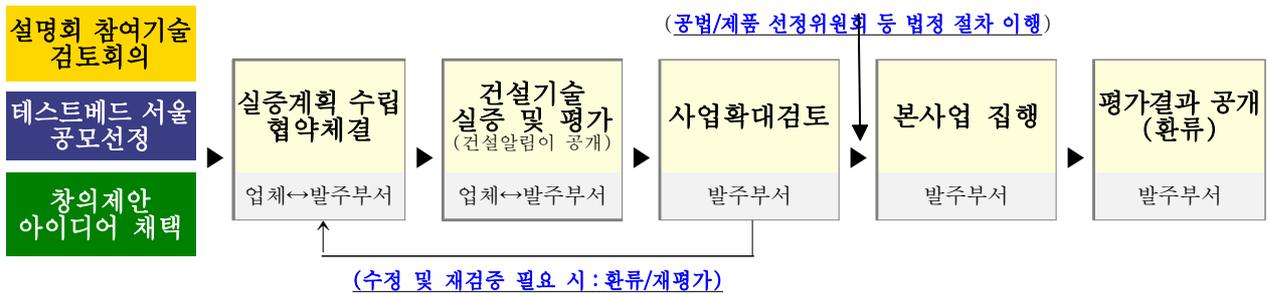
- 방 법: 본부 및 업체 제안에 따른 실증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시행
 - 희망업체는 시범사업 제안서 작성 후 건설알림이를 통해 제출(수시)
 -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 후 시행(본부장 결재)

-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,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-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
-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
-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

- 정보공개: 건설알림이(<https://cis.seoul.go.kr/>) 게시판 게재
 - 1회이상 건설기술 설명회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
 - 실증 진행 시 위치, 내용, 시행주체 등 개요와 평가결과 대시민 공개

- 지원사항: 본부의 경우 실증 기회, 장소 및 대상 제공
 - 실증 완료 이후 발주부서 추천을 받은 기술평가 우수 기업의 경우 기관 표창 대상자 추천(선정) 시 우선 고려
 - 실증에 필요한 비용은 기업(업체)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함.
 - ※ 단, 「테스트베드 서울」 등 별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사업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
- 평가방법: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,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평가 지표에 따라 유사기술 데이터 비교 등 실시
 - 테스트베드 실증계획 수립할 경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결정(원칙). 다만,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장과 협의하여 반영 가능
 - 시범사업 시행 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사업으로의 확대가능성 등 타당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(평가담당관)로 결과 제출

< 테스트베드(시범사업) 추진절차 : 시범사업 발굴·검토 / 사전검토 실시단계 >



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분장(안)

구분	주요역할
총무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설기술 설명회 참여기술 관련 회의 운영 • 시범사업 수요조사 • 시범사업 제안 및 실시 현황 관리 • 시범사업 관련 정책 및 지침 검토 • 시범사업 지원 및 성과 관리
발주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범사업 제안 • 시범사업 실증(실행) 계획 수립 • 시범사업 관련 협약 체결 • 시범사업 평가 및 본사업 시행 검토 • 시범사업 평가결과 등록(공개)
분야별 전담부서(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범사업 관련 기술정보 공유 및 자문

실증참여 제안서(요약본)				
과 제 명				
제 안 내 용	개 요	<i>기술명, 기술개요, 추진배경 및 목표 등 기재</i>		
	내 용	<i>해당 기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</i>		
	기대효과	<i>기존 기술과의 비교하여 기술적, 경제적 효과 등 기술</i>		
	현장설치 계획			
	평가내용 (시험내용)	<input type="checkbox"/> 성능확인 조건 <input type="checkbox"/> 평가항목 및 방법		
소요예산		천원		
사업 책임자	성 명		직 위	
	전 화		휴대전화	
	E-mail			
사업기간	'24. 00. 00 ~ '24. 00. 00 (착수 후 개월)			
첨부 : 세부 시행계획* 1부 <i>* 세부 시행계획 : 지원 내용이 단순하고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</i>				

첨부

세부시행계획

1. 개요

1.1 과제개요

※ 기술명, 기술개요, 기술개발 배경 및 목표 등 기술의 개요에 대해 작성

□

○

-

1.2 기술의 내용

※ 해당기술의 작동 원리를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

※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도면, 사진,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설명

1.3 기대효과

※ 해당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적, 경제적 기대효과 기술

※ 필요시 기존 기술과의 비교 가능

2. 실증운영계획

2.1 목 적

※ 실증 운영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

2.2 주요과제

※ 주요 과제 및 과제별 수행 계획

Task 1	제목	
	수행 내용	
Task 2	제목	
	수행 내용	

2.3 필요사항

※ 해당 기술의 실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
2.5 추진일정

구 분	○월																					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	
○○○	■																					
○○○					■																	

2.6 참여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

※ 참여인력 조직도 및 참여자별 업무분장을 도표로 작성

2.7. 참여기업 업무분장(해당사항 있는 경우)

기업명	업무분장
	※ 구체적으로 기술

2.8 예상 소요비용

※ 실증기술 설치, 운영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

구분	항 목	소요비용(천원)	비고
1			
2			
3			

3. 평가항목 및 방법

※ 기술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, 목표, 검증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

※ 성능확인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취득방법, 양, 품질, 시험조건을 포함한 시험 데이터에 대해 필요한 사항 명시

4. 기술 실증 실적

※ 해당 기술의 검증 시 기존 공정 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

5. 기타 사항

※ 상기 작성내용 외 기타 기술 설명자료 및 성능확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작성

6. 시설물 원상복구 계획

※ 실증 이후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작성

7. 참고자료

※ 기타 기술성능확인을 위해 필요한 참고자료

테스트베드 제안 신청 시 유의(확인) 사항

1. 테스트베드 참여 기술의 운영·유지 관리는 보안 및 안전 관리 등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, 실증계획 수립 시 본부 및 현장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2. 관계 법령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테스트베드에 관한 협약이 해지(무효) 될 수 있습니다.
3.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실증 결과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의 구매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4. 단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·제품만 신청 가능하며, 성능확인서 발급은 불가합니다.